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941
----------	-----

제안연월일 : 2023년 6월 21일
제안자 : 도시계획균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황철규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90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40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병도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53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19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상정해 각각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청년기본법」의 개정(2023.3.21.)에 따라 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청년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친화위원회 제도와 관련한 조항들을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여 정비함
- 서울시 청년지원기관의 유형 및 기능, 체제 개편과 그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을 규정하고, 경비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청년친화위원회의 정의를 개정함 (안 제3조 제7호)
- 나.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를 신설함 (안 제3조 제8호)
- 다.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함 (안 제10조 제3항)
- 라.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청년인재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제4항)
- 마.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허브로 이원화 되어 있는 광역형 청년 지원기관을 통합하고 서울광역청년센터로 명칭 변경 (안 제20조 제1항)
- 바. 서울광역청년센터의 기능을 규정 (안 제20조 제2항)
- 사.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기능을 조정 및 강화 (안 제20조 제3항)
- 아.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안 제20조 제5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청년친화위원회”란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 중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를 말하며, 개별사건을 다루거나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등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원회를 제외한다.
8.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제10조 제3항 중 “위촉하여야”를 “위촉하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로 하고,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청년친화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제10조의2에 따른 청년인재의 자격을 갖춘 청년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6항)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을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로 한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서울광역청년센터’,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등 청년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서울광역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능력개발 및 진로모색 사업
2. 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지원, 취약계층 청년 지원 등 사회안전망 사업
3. 서울청년센터 운영 지원 및 성과관리·평가
4. 청년지원 전문인력 육성사업
5. 지역단체 및 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대외 협력 사업
6.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및 교류 지원
7. 청년 커뮤니티 및 단체활동 지원, 공간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
8. 정책 수립·운영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정보 집적과 공유
9. 그 밖에 청년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지원정보 집적·제공 및 분야별 종합상담 사업
2.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
3. 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지원, 취약계층 청년 지원 등 사회안전망 사업
4. 지역단체 및 시설 등과의 연계 및 대외 협력 사업
5. 생활권 기반 청년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 지원
6. 지역별 청년 활동 공간 및 기반 제공
7. 그 밖에 청년의 생활권 기반 정책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 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p>제3조 (용어의 정의) (생 략)</p> <p>1. ~ 6. (생 략)</p> <p>7. "청년친화위원회"란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 중 <u>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말한다.</u></p> <p align="center"><신 설></p> <p>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p> <p>① ~ ② (생 략)</p> <p>③ 시장은「청년기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청년친화위원회를 선정하고 해당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u>위촉하여야</u> 한다.</p> <p align="center"><신 설></p> <p>④ ~ ⑤ (생 략)</p>	<p>제3조 (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p> <p>1. ~ 6. (현행과 같음)</p> <p>7. _____ _____ <u>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를 말하며, 개별사건을 다루거나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등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원회는 제외한다.</u></p> <p>8. <u>"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u></p> <p>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_____ _____ _____ 위촉하 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u>청년친화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제10조의2에 따른 청년인재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촉할 수 있다.</u></p> <p>⑤ ~ ⑥ (현행 제4항~제5항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청년지원기관의 설치·운영)</p> <p>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등 청년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서울특별시 청년허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년 커뮤니티 및 단체활동 지원, 공간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 2.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체계 활성화 3. 청년의 취업·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시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 4. 정책 수립·운영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정보 집적과 공유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③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능력개발 및 진로모색 사업 2. 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지원 등 사회안전망 사업 3. 청년지원 전문인력 육성사업 4.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지원·교육·평가 5. 그 밖에 청년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p>제20조(청년지원기관의 설치·운영)</p> <p>① _____ '서울광역청년센터', _____</p> <p>② 서울광역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능력개발 및 진로모색 사업 2. 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지원, 취약계층 청년 지원 등 사회안전망 사업 3. 서울청년센터 운영 지원 및 성과관리·평가 4. 청년지원 전문인력 육성사업 5. 지역단체, 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대외 협력 사업 6.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및 교류 지원 7. 청년 커뮤니티 및 단체활동 지원, 공간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 8. 정책 수립·운영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정보 집적과 공유 9. 그 밖에 청년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③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년지원정보 집적·제공 및 분야별 종합상담 사업 2.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 3. 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지원, 취약계층 청년 지원 등 사회안전망 사업 4. 지역단체 및 시설 등과의 연계 및 대외 협력 사업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고 인정하는 사업</u></p> <p>④ <u>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u></p> <p>1. <u>청년지원정보 집적·제공 및 분야별 종합상담 사업</u></p> <p>2. <u>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u></p> <p>3. <u>지역별 청년 활동 공간 및 기반 제공</u></p> <p>4. <u>그 밖에 청년의 생활권 기반 정책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u></p> <p>⑤ (생 략)</p> <p>⑥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청년지원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자치구에서 '서울청년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u>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u> 지원할 수 있다.</p>	<p>5. <u>생활권 기반 청년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 지원</u></p> <p>6. <u>지역별 청년 활동 공간 및 기반 제공</u></p> <p>7. <u>그 밖에 청년의 생활권 기반 정책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u></p> <p>< 삭 제 ></p> <p>④ (현행 5조와 같음)</p> <p>⑤ _____ _____ _____ _____ <u>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u> _____.</p>